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법제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제처에 법제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. ~ 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35”를 “23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4”를 “23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19”를 “22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5</u>	<u>236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34</u>	<u>235</u>	+1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19</u>	<u>220</u>	+1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9